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 및 성주군 환경업무 전반의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관계있는 “사업장폐기물”과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함으로써 그 처리방법의 모호성을 해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규정 (안 제4조 및 제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에 있어, 그 절차 및 계약서 명시사항, 계약기간, 비용정산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규정 (안 제7조)
-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성상에 따른 배출방법 규정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방법 신설 (안 제11조의2)
-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신청 방법 규정

○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안 제15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2018.2.22. ~ 2018.3.14.)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협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주민복지과-16061(2018.3.1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를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등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에 따라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방법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계약해지”를 “대행계약 이행 및 계약해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처리비용의 정산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를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으로, “관계법”을 “관계 법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폐기물관리 제

외지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간·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설치·운영하는"을 "군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군직영의"로,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거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를 "따라 폐기물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형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집·운반·처리하기"를 "수집·운반·처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닐봉두"를 "비닐봉투"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연하거나 당해"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으로,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삽입한다.

제9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로, “사업장생활쓰레기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로, “생활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만”을 “생활쓰레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을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공업진흥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쓰레기”를 “종량제”로, “군수와 광고주”를 “광고주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리 단위로 골목길”을 “읍・면단위로 시가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리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경우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소 (변경)”을 “취소・변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제1항”을 “제1항”으로, “당해 관리 주체에게,”를 “해당 관리 주체가”로, “등산로・유원지 쓰레기 통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을 “대형”으로,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14조 중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처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수료의 경감)"을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일반용 봉투를"을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으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을 "방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제15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6조의 제목 "(쓰레기 봉투의 매수)"를 "(종량제 봉투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반용"을 "종량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를 삽입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분리·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객터미널법"을 "「여객터미널법」"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하며"를 "한하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화등"을 "변화 등"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5조"를 "제7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3의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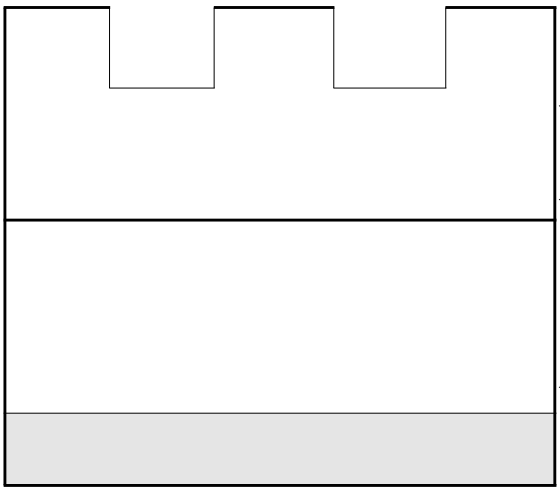
종류	용 량 (ℓ)	치수 높이×나비	높 이			묶는 끈		비 고
			쓰레기 담는부분	묶는부분	접합가공 부분	나비	길이	
매립용 소각용	5	46.5×26	32.3	13.2	1	6	10	
재사용 소각용	10	53.5×36 56.5 33	36 40	16.5 15.5	1	7	12	
재사용 소각용	20	65.3×45 69.5 42	45 50.1	19.3 18.4	1	8	15	
매립용 소각용	30	78.5×48	57.2	20.3	1	10	17	
매립용 소각용	50	91.5×56	67.7	22.8	1	12	19	
매립용 소각용	75	103.5×65	76.8	25.7	1	14	21	
매립용 소각용	100	113.5×71	84.9	27.6	1	15	23	

[별표 4의2]

종량제 봉투 모양

봉투의 모양은 튜브형에서 한면은 접착되고, 한면은 열린 봉투 모양으로 하되,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구 조	모 양	비 고
절취형 봉투	평 봉 투	W형	일반용



[별표 9]

위반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포상금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 또는 매립한 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1만원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3만원
다.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만원	3만원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만원	3만원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과태료부과금액의50%
바. 건축폐재류 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 지정폐기물 제외)	100만원	

※ 과태료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준하며, 상기 기술되지 않은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기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서</td></tr>
<tr><td rowspan="3">대 행
지정업체</td><td>업체명</td><td></td><td>업 종 명</td><td></td></tr>
<tr><td>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대행처리
대상지역</td><td colspan="2"></td><td>폐기물의
처리방법</td><td></td></tr>
<tr><td>폐기물의
종 류</td><td colspan="2"></td><td>폐기물량</td><td>톤/일</td></tr>
<tr><td>대행지정
기 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5">「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행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3" rowspan="2">□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td><td>처리기간</td></tr>
<tr><td>제 호</td><td>즉 시</td></tr>
<tr><td rowspan="2">배 출 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읍·면 리 번지(전화 :)</td></tr>
<tr><td colspan="5">신 고 내 역</td></tr>
<tr><td colspan="5">○ 사업장폐기물
<table><tr><td>폐기물종류</td><td>반입량(톤)</td><td>수수료(원)</td><td>비 고</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 대형 폐기물
<table><tr><td>폐기물 종류</td><td>규격</td><td>수량</td><td>수수료(원)</td><td>배출장소</td><td>비 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성주군수 귀하</td><td>수수료
현금또는
수입증지</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종량제 봉투 판매지정
□ 신청서
□ 변경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 화 :)</td></tr>
<tr><td colspan="6">신 고 내 역</td></tr>
<tr><td colspan="6">○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td></tr>
<tr><td rowspan="3">신청내역</td><td>상 호 명</td><td></td><td>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업 종</td><td></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판매업소 변경 내용</td></tr>
<tr><td colspan="2" rowspan="2">변경 사항</td><td colspan="2">변 경 전</td><td colspan="2">변 경 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변경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성주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5">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2.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4.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신고번호 제 호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업소 신고필증</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 화 :)</td></tr>
<tr><td colspan="5">신 고 내 역</td></tr>
<tr><td>상 호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업 종</td><td></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5">「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의하여 배출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법시행령 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호의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 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서에 따라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신 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방법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수집·운반·처리방법	<삭 제>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신 설>	6. 처리비용의 정산
5.·6. (생 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계약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관계법규----------.
<신 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제5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간·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군 직영의 ---------- ---------- ---------- ---------- 있다. 다만,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출자 신고서에 현금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폐기물의 ---------- ---------- ---------- ---------- ---------- ---------- ---------- ----------.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집·운반·처분하기 ----------.
⑤ 군수는 1회용 비닐봉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비닐봉투----------.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② ---------- 생활폐기물---------- - 지연할 수 있고, 해당 ----------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 법 제68조----------과태료----------. <단서 삭제>
<신 설>	제3장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 ----------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생활쓰레기를 ---------- ---------- ----------.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 및 탄산칼슘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봉투는 주황색, 불연성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② ---- 종량제 ---------- ----------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 종량제 봉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⑤ 군수는 쓰레기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⑤ ---- 종량제 ---------- ---------- - 광고주와---------- 따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 종량제 봉투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읍·면단위로 시가지 ------- ----------. ---------- ---------- 읍·면장----------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별표 8]과 같이 한다. 이 경우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배출자 사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할 경우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수집·운반·처분---------- ② ----------. --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분----------. ③ (현행과 같음) ④ ---------- 취소·변경----------.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 통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해당 관리 주체가 ---------- 대형 ----------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 수집·운반·처분----------.
제15조(수수료의 경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 방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감면--.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자	에 따른 한부모가정
<신 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 ---------- 종량제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 종량제 봉투 ----------.
<신 설>	제4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 어느 하나에 ----------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1. 「식품위생법」----------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2.「여객터미널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제17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출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9]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법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① ---------- 지급할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에 대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면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하하며,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시 다발적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한하며---------.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 법 제62조 제2항----------

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변화 등 ----------.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1. 제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